

옥외집회(시위·행진) 신고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	
신고인	성 명(또는 직책)	생년월일		
	주 소 (전화번호 :)			
집회 (시위· 행진) 개요	집회(시위·행진) 명칭			
	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~ 년 월 일 시 분			
	개최장소			
	개최목적			
관련자 정보	주최자	성명 또는 단체명	생년월일	
			직업	
		주 소 (전화번호 :)		
	주관자	성명 또는 단체명	생년월일	
			직업	
		주 소 (전화번호 :)		
	주최단체의 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
			직업	
		주 소 (전화번호 :)		
	연락 책임자	성명	생년월일	
		직업		
주 소 (전화번호 :)				
질서유지인		명		
참가 예정 단체· 인원	참가예정단체			
	참가예정인원			

시위 방법 및 진로	시위 방법(시위 대형, 구호제창 여부,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등)
	시위 진로(출발지, 경유지, 중간 행사지, 도착지, 차도·보도·교차로의 통행방법 등)

참고 사항	준비물(차량, 확성기, 입간판,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등)
----------	---

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경찰서장(시·도경찰청장) 귀하

첨부서류	1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(주최자, 주관자, 참가 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시위·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(시위와 행진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참고사항에는 아래의 사항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 단서,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용재결 또는 금지통고의 효력 상실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
나. 집회시위의 제한·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
-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통고를 받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